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First Class연금 증권투자신탁(제1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 : 부책임운용역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7월 20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3. 운용전문인력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권태남	3. 운용전문인력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허승찬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7월 20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권태남→허승찬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권태남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허승찬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아름다운실버배당 증권투자신탁(제1호)[채권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 : 부책임운용역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7월 20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4. 운용전문인력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권태남	4. 운용전문인력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허승찬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7월 20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권태남→허승찬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권태남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허승찬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(제1호)[채권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 : 부책임운용역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7월 20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4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권태남	4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허승찬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7월 20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권태남→허승찬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권태남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허승찬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인Best 연금 증권자투자신탁(제1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 : 부책임운용역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7월 20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3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권태남	3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허승찬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7월 20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권태남→허승찬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권태남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허승찬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모투자신탁(제1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 : 부책임운용역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7월 20일

4. 대비표

[변경등록신청서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7월 20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권태남→허승찬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권태남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허승찬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(백만원)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(백만원)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파워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(제1호)[채권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 : 부책임운용역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7월 20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4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권태남	4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허승찬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7월 20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권태남→허승찬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권태남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허승찬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Smart Up 포커스포트폴리오 증권투자신탁 (제1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 : 부책임운용역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7월 20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3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권태남	3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허승찬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7월 20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권태남→허승찬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권태남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허승찬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Smart Up Plus포커스포트폴리오 증권투자신탁(제1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 : 부책임운용역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7월 20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3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권태남	3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허승찬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7월 20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권태남→허승찬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권태남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허승찬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스마트블루칩바스켓장기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(제1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 : 부책임운용역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7월 20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3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권태남	3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허승찬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7월 20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권태남→허승찬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권태남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허승찬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스마트블루칩바스켓장기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 (제2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 : 부책임운용역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7월 20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3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권태남	3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허승찬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7월 20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권태남→허승찬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권태남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허승찬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SmartUpPlus포커스포트폴리오증권투자신탁(제2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 : 부책임운용역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7월 20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3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권태남	3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허승찬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7월 20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권태남→허승찬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권태남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허승찬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SmartUpPlus포커스포트폴리오증권투자신탁(제3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 : 부책임운용역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7월 20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3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권태남	3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허승찬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7월 20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권태남→허승찬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권태남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허승찬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SmartUpPlus포커스포트폴리오증권투자신탁(제4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 : 부책임운용역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7월 20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3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권태남	3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허승찬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7월 20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권태남→허승찬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권태남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허승찬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SmartUpPlus포커스포트폴리오증권투자신탁(제5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 : 부책임운용역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7월 20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3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권태남	3. 운용전문인력 2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허승찬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7월 20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권태남→허승찬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권태남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허승찬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배당1Q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 : 종류형 C-PE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7월 20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<추가>	종류C-PE : BT206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제3항 <추가>	제3항 13. 종류 C-P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
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1항 <추가>	제1항 13. 종류 C-PE 수익증권
제19조 (운용 및 투자제한)	제6호 라.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	제6호 라.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,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	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,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

	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제4항제2호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이하 "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"라 한다)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집합투자증권(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) 가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나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(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)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	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제4항제2호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이하 "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"라 한다)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의 집합투자증권(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)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 가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나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,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
제39조 (보수)	제3항 <추가>	제3항 [종류C-PE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3.0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4.0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20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.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· 종류 C2~C4, C-F, S, C-P, C-P2 보수 상세내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· 종류 C2~C4, C-F, S, C-P, C-P2, C-PE 보수 상세내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C-PE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종류형 명칭: C-PE 펀드코드: BT206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C-PE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종류형 명칭: C-PE 펀드코드: BT206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7년 07월 20일 종류형 C-PE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<종류 C-PE 신설>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종류 C-PE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(2)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라.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 특례 나.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이하 "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"라 한다)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집합투자증권(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) (1)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 종목 이상일 것 (2)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(그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 개월의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(2)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라.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 (사모집합투자기구에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 특례 나.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이하 "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"라 한다)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의 집합투자증권(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)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

	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)이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(3)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 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 개월간 영 제 251 조제 2 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 분의 5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(생략) 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	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 (1)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(2)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 종목 이상이고, 각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(현행과 동일) 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**가. 매입** (2) 종류별 가입자격 <종류 C-PE 신설>	**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**가. 매입** (2) 종류별 가입자격 구분 / 가입자격 C-PE /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<종류 C-PE 신설>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-PE 선취판매수수료, 후취판매수수료, 환매

<table>
<tr>
<td></td>
<td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종류 C-PE 신설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종류 C-PE 신설></td>
<td>수수료 : 없음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>지급비율(연간, %)</th></tr><tr><th>종류 C-PE</th></tr><tr><td>집합투자업자보수</td><td>0.30%</td></tr><tr><td>판매회사보수</td><td>0.40%</td></tr><tr><td>신탁업자보수</td><td>0.05%</td></tr><tr><td>일반사무 관리보수</td><td>0.02%</td></tr><tr><td>보수합계</td><td>0.77%</td></tr><tr><td>기타비용</td><td>실비</td></tr><tr><td>총보수 및 비용</td><td>0.77%</td></tr><tr><td>총보수 및 비용 (피투자집합투자기구보수포함)</td><td>1.12%</td></tr><tr><td>증권거래비용</td><td>실비</td></tr></table>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1년후</th><th>3년후</th><th>5년후</th><th>10년후</th></tr><tr><td>C-PE</td><td>115</td><td>362</td><td>634</td><td>1,444</td></tr></table></td>
</tr>
<tr>
<td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
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생략)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
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업데이트)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
</tr>
<tr>
<td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td>
<td>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
나. 수시공시
(2) 수시공시
(추가)</td>
<td>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
나. 수시공시
(2) 수시공시
10)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</td>
</tr>
</table>

		-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-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 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

2. 주요 변경내용

- 종류 C-E, C-PE 신설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7월 20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<추가>	종류 C-E : BT209 종류 C-PE : BT210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제3항 <추가>	제3항 5. 종류 C-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(On-line) 가입 전용 수익증권 6. 종류 C-P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
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1항 <추가>	제1항 5. 종류 C-E 수익증권 6. 종류 C-PE 수익증권
제20조(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)	②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제19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	②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제19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제39조 (보수)	제3항 <추가>	제3항 [종류 C-E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82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0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8 [종류 C-PE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82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9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8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· 종류 A-U 및 종류 W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· 종류 A-U, 종류 W, 종류 C-E 및 종류 C-PE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의 보수내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,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C-E, C-PE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 /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-E / BT209 C-PE / BT210
제2부 집합투자기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C-E, C-PE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집합투자기구 명칭 / 금융투자협회

<table>
<tr><td>구에 관한 사항</td><td></td><td>
<table>
<tr><th>(종류형 명칭)</th><th>펀드코드</th></tr>
<tr><td>C-E</td><td>BT209</td></tr>
<tr><td>C-PE</td><td>BT210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17년 07월 20일
- 종류 C-E, C-PE 신설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
<종류 C-E, C-PE 신설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th>판매수수료 총보수 및 판매보수</th></tr>
<tr><td>종류 C-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(On-line) 가입 전용 수익증권</td><td>판매수수료: 없음
연 0.23 % / 0.10%</td></tr>
<tr><td>종류 C-P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td>판매수수료: 없음
연 0.22% / 0.09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가. 투자대상
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
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서 제 19 조제 9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가. 투자대상
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
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서 제 19 조제 9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것으로 봄</td><td>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가. 매입
(2) 가입대상
*종류별 가입자격
<종류 C-E, C-PE 신설>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가. 매입
(2) 가입대상
*종류별 가입자격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<tr><td>종류 C-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(On-line) 가입 전용 수익증권</td></tr><tr><td>종류 C-P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종류 C-E, C-PE 신설>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(생략)
<종류 C-E, C-PE 신설>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종류 C-E, C-PE
선취판매수수료, 후취판매수수료, 환매수수료 : 없음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(업데이트)
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2">지급비율(연간, %)</th></tr><tr><th>종류 C-E</th><th>종류 C-PE</th></tr><tr><td>집합투자업자 보수</td><td>0.082%</td><td>0.082%</td></tr><tr><td>판매회사보수</td><td>0.100%</td><td>0.090%</td></tr><tr><td>신탁업자보수</td><td>0.030%</td><td>0.030%</td></tr><tr><td>일반사무관리 보수</td><td>0.018%</td><td>0.018%</td></tr><tr><td>보수합계</td><td>0.230%</td><td>0.220%</td></tr><tr><td>기타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</td>
<td>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종류 C-E, C-PE 신설></td>
<td>
<table>
<tr><td>총보수및비용</td><td>0.230%</td><td>0.220%</td></tr>
<tr><td>증권거래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
</table>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1년후</th><th>3년후</th><th>5년후</th><th>10년후</th></tr>
<tr><td>종류 C-E</td><td>24</td><td>74</td><td>130</td><td>296</td></tr>
<tr><td>종류 C-PE</td><td>23</td><td>71</td><td>125</td><td>284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
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
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
</tr>
<tr>
<td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td>
<td>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
나. 수시공시
(2) 수시공시
(추가)</td>
<td>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
나. 수시공시
(2) 수시공시
10)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-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
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
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</td>
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클래스원신종MMF(S-36호)

2. 주요 변경내용

- 종류 C-E, C-PE 신설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7월 20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<추가>	종류 C-E : BT211 종류 C-PE : BT212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제3항 <추가>	제3항 4. 종류 C-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(On-line) 가입 전용 수익증권 5. 종류 C-P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
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1항 <추가>	제1항 4. 종류 C-E 수익증권 5. 종류 C-PE 수익증권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제1항 3. (생략)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)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행위	제1항 3. (생략)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-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를 제외한다)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행위

제20조(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)	②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제19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	②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제19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제39조 (보수)	제3항 <추가>	제3항 [종류 C-E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1.356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0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80 [종류 C-PE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1.356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9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80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.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(생략) **※ 주석사항** · 종류 W의 보수내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	**보수** (업데이트) **※ 주석사항** · 종류 W, C-E, C-PE 의 보수내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,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 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

	(생략)	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종류 C-E, C-PE 신설>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table><tr><th>집합투자기구 명칭
(종류형 명칭)</th><th>금융투자협회
펀드코드</th></tr><tr><td>C-E</td><td>BT211</td></tr><tr><td>C-PE</td><td>BT212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종류 C-E, C-PE 신설>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table><tr><th>집합투자기구 명칭
(종류형 명칭)</th><th>금융투자협회
펀드코드</th></tr><tr><td>C-E</td><td>BT211</td></tr><tr><td>C-PE</td><td>BT212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17년 07월 20일
- 종류 C-E, C-PE 신설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
<종류 C-E, C-PE 신설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th>판매수수료
총보수 및
판매보수</th></tr><tr><td>종류 C-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(On-line) 가입 전용 수익증권</td><td>판매수수료: 없음
연 0.2836% / 0.1000%</td></tr><tr><td>종류 C-P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</td><td>판매수수료: 없음
연 0.2736% / 0.0900%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td>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가. 투자대상
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
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서 제 19 조제 9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

나. 투자제한
(생략)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)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</td><td colspan="3"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가. 투자대상
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
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서 제 19 조제 9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

나. 투자제한
(현행과 동일)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-19조제3항제2호에따른 환매조건부매수를 제외한다)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가. 매입
(2) 종류별 가입자격
<종류 C-E, C-PE 신설></td><td colspan="3"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가. 매입
(2) 종류별 가입자격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<tr><td>종류 C-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(On-line) 가입 전용 수익증권</td></tr><tr><td>종류 C-P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td><table><tr><td></td><td>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종류 C-E, C-PE 신설>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(생략)
<종류 C-E, C-PE 신설>

<br
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**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(추가)	**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10)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-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-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 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유럽 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 : 종류형 C-PE, C-P2E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7월 20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<추가>	종류C-PE : BT213 종류 C-P2E : BT667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제3항 <추가>	제3항 15. 종류 C-P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6. 종류 C-P2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
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1항 <추가>	제1항 15. 종류 C-PE 수익증권 16. 종류 C-P2E 수익증권
제39조 (보수)	제3항 <추가>	제3항 [종류C-PE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2.00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4.0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20

		[종류C-P2E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2.00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5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20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.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종류 C2~C4, C-F, C-P, C-P2, W, AG, CG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종류 C2~C4, C-F, C-P, C-P2, W, AG, CG, C-PE 및 C-P2E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종류 C-PE, C-P2E 신설>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table><tr><th>집합투자기구 명칭
(종류형 명칭)</th><th>펀드코드</th></tr><tr><td>C-PE</td><td>BT213</td></tr><tr><td>C-P2E</td><td>BT667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종류 C-PE, C-P2E 신설>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table><tr><th>집합투자기구 명칭
(종류형 명칭)</th><th>펀드코드</th></tr><tr><td>C-PE</td><td>BT213</td></tr><tr><td>C-P2E</td><td>BT667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17년 07월 20일
종류형 C-PE, C-P2E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
<종류 C-PE, C-P2E 신설></td>
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
<table>
<tr><th>종류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
<tr><td>C-P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
<tr><td>C-P2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가. 매입
(2) 종류별 가입자격
<종류 C-PE, C-P2E 신설></td>
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가. 매입
(2) 종류별 가입자격
<table>
<tr><th>종류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
<tr><td>C-P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
<tr><td>C-P2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종류 C-PE, C-P2E 신설>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종류 C-PE, C-P2E
선취판매수수료, 후취판매수수료, 환매</td>
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종류 C-PE, C-P2E 신설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종류 C-PE, C-P2E 신설></td><td>수수료 : 없음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2">지급비율(연간, %)</th></tr><tr><th>종류 C-PE</th><th>종류 C-P2E</th></tr><tr><td>집합투자업자보수</td><td>0.20%</td><td>0.20%</td></tr><tr><td>판매회사보수</td><td>0.40%</td><td>0.35%</td></tr><tr><td>신탁업자보수</td><td>0.03%</td><td>0.03%</td></tr><tr><td>일반사무관리보수</td><td>0.02%</td><td>0.02%</td></tr><tr><td>보수합계</td><td>0.65%</td><td>0.60%</td></tr><tr><td>기타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<tr><td>총보수 및 비용</td><td>0.65%</td><td>0.60%</td></tr><tr><td>합성총보수및비용</td><td>1.65%</td><td>1.60%</td></tr><tr><td>증권거래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</table>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1년후</th><th>3년후</th><th>5년후</th><th>10년후</th></tr><tr><td>C-PE</td><td>169</td><td>533</td><td>934</td><td>2,127</td></tr><tr><td>C-P2E</td><td>164</td><td>517</td><td>906</td><td>2,063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td><td>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
나. 수시공시
(2) 수시공시
(추가)</td><td>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
나. 수시공시
(2) 수시공시
10)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</td></tr>
</table>

		는 사항 -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-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 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7월 20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(생략)	**보수** (업데이트)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 (생략)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 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 (업데이트)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 **2. 위험등급**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1.75% 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 **2. 위험등급**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2.50% 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7년 07월 20일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

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1.75%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2.50%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**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(추가)	**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10)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-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

		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-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 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(순차적 연번 변경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글로벌리츠 부동산 투자신탁[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- 종류형 C-PE, C-P2E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년 07월 20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<추가>	종류 C-PE : BT656 종류 C-P2E : BT657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제3항 <추가>	제3항 17. 종류 C-P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8. 종류 C-P2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
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1항 <추가>	제1항 17. 종류 C-PE 수익증권 18. 종류 C-P2E 수익증권
제20조 (한도및 제한의예외)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,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,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

	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	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제39조 (보수)	제3항 <추가>	제3항 [종류C-PE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9.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2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6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4 [종류C-P2E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9.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7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6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4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.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종류 C2~C5, C-F, C-W, I, S, C-P, C-P2, AG, CG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종류 C2~C5, C-F, C-W, I, S, C-P, C-P2, AG, CG, C-PE 및 C-P2E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III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	**1. 과세** (2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C-P 수익증권 가입자 (3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종류C-P2 수익증권 가입자	**1. 과세** (2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C-P, 종류C-PE 수익증권 가입자 (3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종류C-P2, 종류C-P2E 수익증권 가입자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
<table>
<tr><td>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종류 C-PE, C-PE2E 신설>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table><tr><th>집합투자기구 명칭
(종류형 명칭)</th><th>펀드코드</th></tr><tr><td>C-PE</td><td>BT656</td></tr><tr><td>C-P2E</td><td>BT657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종류 C-PE, C-P2E 신설>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table><tr><th>집합투자기구 명칭
(종류형 명칭)</th><th>펀드코드</th></tr><tr><td>C-PE</td><td>BT656</td></tr><tr><td>C-P2E</td><td>BT657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17년 07월 20일
- 종류형 C-PE, C-P2E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
<종류 C-PE, C-P2E 신설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
<table><tr><th>종류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<tr><td>종류
C-P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<tr><td>종류
C-P2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나. 투자제한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나. 투자제한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사항</td><td><한도초과>
(생략)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</td><td><한도초과>
(현행과 동일)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가. 매입
(2) 종류별 가입자격
<종류 C-PE, C-P2E 신설>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가. 매입
(2) 종류별 가입자격
<table><tr><th>종류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<tr><td>종류 C-P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<tr><td>종류 C-P2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종류 C-PE, C-P2E 신설>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종류 C-PE, C-P2E 신설>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종류 C-PE, C-P2E
선취판매수수료, 후취판매수수료, 환매수수료 : 없음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2">지급비율(연간, %)</th></tr><tr><th>종류 C-PE</th><th>종류 C-P2E</th></tr><tr><td>집합투자업</td><td>0.900%</td><td>0.900%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</td>
<td>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종류 C-PE, C-P2E 신설></td>
<td>
<table>
<tr><td>자보수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판매회사보수</td><td>0.320%</td><td>0.270%</td></tr>
<tr><td>신탁업자보수</td><td>0.060%</td><td>0.060%</td></tr>
<tr><td>일반사무관리보수</td><td>0.040%</td><td>0.040%</td></tr>
<tr><td>보수합계</td><td>1.320%</td><td>1.270%</td></tr>
<tr><td>기타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
<tr><td>총보수 및 비용</td><td>1.320%</td><td>1.270%</td></tr>
<tr><td>증권거래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
</table>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1년후</th><th>3년후</th><th>5년후</th><th>10년후</th></tr>
<tr><td>C-PE</td><td>135</td><td>426</td><td>748</td><td>1,702</td></tr>
<tr><td>C-P2E</td><td>130</td><td>410</td><td>719</td><td>1,637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
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 수익증권 가입자</td>
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
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, 종류 C-PE 수익증권 가입자</td>
</tr>
<tr>
<td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td>
<td>1.재무정보
(생략)</td>
<td>1.재무정보
(업데이트)</td>
</tr>
<tr>
<td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
<td>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
<td>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
</tr>
<tr>
<td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td>
<td>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
나. 수시공시
(2) 수시공시
(추가)</td>
<td>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
나. 수시공시
(2) 수시공시
10)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</td>
</tr>
</table>

		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・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-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- 지상권・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・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・변경 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(순차적 연번 변경)